문서번호	감사담당관-12565
결재일자	2015.9.7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주무관	タラ の	감사담당관	부구청장	구청장	
왕주미	김정아	이경환	代손정수	09/07 김 <b>영배</b>	
협 조					

# - 2015년 8월 (제30차) -성<del>북구</del> 인권위원회 정례회 개최결과



감 사 담 당 관 인 권 센 터

# 2015년 8월 (제30차) 성북구 인권위원회 정례회 개최결과

## 의 회의개요

**의 시**: 2015. 8. 25.(화) 17:00~19:40

**◎ 장 소**: 안암동주민센터(4층 회의실)

윤정섭, 이윤하, 최도용, 홍미리)

#### ◎ 주요안건

- 조례·규칙 제·개정안 8건 인권영향평가 심의

-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

### ■ 회의결과

#### ◎ 인권영향평가 심의 및 결정사항

- 조례·규칙 제·개정안 인권영향평가 결과 심의
  - · 서울특별시 성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외 2개 조례 : 원안동의
  - ·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: 권고결정(28호)

**인권위원회 권고 제28호**: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[별표 1]에 의해서 지나치게 구체적인 특정 사업명을 명시하는 방식은 주민 또는 소수자의 참여를 저해하고 기회를 박탈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, 사업 내용의 변경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내용을 중심으로 완화된 사업 범위를 규정함이 타당하다는 내용

-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외 2개 조례 : 인권센터 검토 의견 동의
- ·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 : 권고결정(29호)

### 인권위원회 권고 제29호: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

상위법령인 '양성평등기본법'의 개정으로 추진 중 임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,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조례의 목적에도 불구하고, 성소수자를 제외한 '남성'과 '여성'의 권익을 위한 조례로 규정되는 것이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

####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

- 성북인권페스티벌 기획 초안
- 1기 인권센터 시민위원 운영 및 구성 결과
- 청소년 또래 노동인권상담사 양성 교육과정
- 2015년 8기 주민인권학교 운영 계획
-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추진 계획
- 직원 인권특강 운영계획
- **다음 회의 일정** : 2015. 10. 8.(목) 15:30~18:00 (성북배움터, 구청 3층)
- 붙 임: 1. 제30차 인권위원회 회의자료 1부.
  - 2. 제30차 인권위원회 회의록 1부
  - 3. 권고 결정문(제28호)-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관한 권고 결정문 1부
- 4. 권고 결정문(제29호)-성평등 기본조례,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 에 관한 조례에 대한 권고 권고 1부 .끝.